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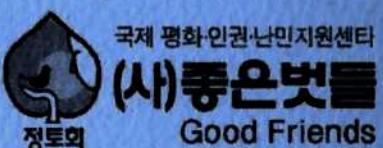
Mh.a.2



Workshop Human Rights

아시아 난민의 실태와 NGO의 역할

Current Situation of
Refugees
in Asia
and the role of NGOs



국제 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

(사) 좋은벗들
Good Friends

137-073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
전화 02)587-8996 · 전송 02)587-8998
E-mail : goodfriends@jungto.or.kr
URL : <http://www.jungto.org/gf>

주관 (사) 좋은벗들



Workshop Human Rights

아시아 난민의 실태와 NGO의 역할

Current Situation of
Refugees
in Asia
and the role of NGOs

주관 (사) 좋은벗들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며

“새로운 천년, 평화의 21세기를 맞이하자!”

일부의 인류학자들은 20세기는 인류가 지나온 그 어느 백년 보다도 많은 변화와 사건이 있었으며, 그래서 인류는 더한층 진보하고 발전해 왔다라고 이야기 한다. 진정 세상은 진보하였는가?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20세기는 식민지 전쟁이라는 이름의 침략전쟁으로 시작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거대한 실험이 행해지고 그 실험의 결과로 장식되어진 100년이었다. 뿐만 아니라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한 세계 1·2차 대전은 모든 인류에게 평화야말로 인류가 세상에 실현시켜야 할 최고의 이념임을 확신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아시아는 20세기를 열강의 침략과 식민지배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발전, 이념과 사상의 대립 속에서 지나왔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 얼마나 내달려왔던가? 하지만 아직도 이념의 벽을 사이에 두고 형제가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 서울NGO 세계대회에서 “아시아의 난민실태와 NGO의 역할” (버어마, 방글라데시, 북한)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준비하였다. 진보의 시대라고 진단하는 20세기의 칼바람을 거세게 맞은 아시아 지역에는 수많은 난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상이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가 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구호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 명의 난민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난민문제를 이야기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아프리카나 코소보의 경우와 같이 알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더욱 그러하다. 이번 기회로 세계의 난민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999. 10. 13

사) 좋은벗들

● 프로그램

1부 아시아의 난민실태와 NGO의 역할 : 버어마, 방글라데시, 북한

3: 00 개회식 / 사회자 : 강여경(국제부)

인사말 / 법륜스님

참가자 소개

3: 15 발제 1 : 방글라데시 치타콩(CHT)의 난민들

슈만나란카르 테로 (Sumanalankar Mahathero 스님, 방글라데시 난민구호활동가)

3: 25 발제2 : 버어마 난민의 실태와 NGO의 역할

아웅 묘민 (Aung Myo min, 버어마 난민구호활동가)

3: 35 발제3 : 김길선(북한 난민)

질의응답 및 휴식

2부 북한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NGO 역할

4: 10 사회자 / 박순성

참가자 소개

4: 20 발제1 : 중국 체류 탈북어린이의 성장발육 상태

박순영(남북어린이 어깨동무)

4: 30 발제2 : 국제법상에서의 북한 난민지위규정에 관하여

이금순(통일연구원)

4: 40 발제3 : 중국 현지에서의 NGO 활동의 전망과 한계

윤여상 박사 (북한인권시민연합)

전체토론



방글라데시 치타콩(CHT)의 난민들

Ven. Sumanalankar Mahathero
President Parbatya Bouddha Mission

방글라데시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고 그곳에 13,190.87평방미터 크기의 Chittagong Hill Tracts (CHT)이라는 고원지역이 있다. 그곳에는 백만이상의 원주민 부족들이 아득히 먼 옛날부터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화전농작으로 생활해왔다. 나는 진심으로 아시아 난민들의 현황과 NGO들의 역할에 대한 훌륭한 워크샵을 마련한 주최측에 감사하며 방글라데시 난민들의 현황을 규명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참으로 이러한 워크샵은 시기적절하다.

1. 난민문제의 원인

1947년 인도-파키스탄이 두 개의 자치국으로 분할되었을 때는 Chittagong Hill Tracts (CHT- 치타콩)에는 겨우 2%에 달하는 평지주민(방갈리)족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 부족 공동체의 사려깊은 지도자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2개국 체제에 근거해서 인도에 합병되기 를 원했다. 그러나 부족지도자의 이런 소망은 소수민족이며 정치적 힘이 없는 까닭에 현실화되지 못했고 파키스탄정부는 부족민을 인도의 지지자로 취급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파키스탄 정부는 부족민들을 차별해왔고, 치타콩으로부터 부족민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였으며 야만적 행동의 첫 단계로 Rangamati 지역의 Kaptai에 있는 Karnafully 강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해 왔다. 맹렬한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54,000에이커 이상의 논이 침수되고 100,000명이 땅과 집을 잃고 그들의 50%가 인도의 Tripura, Assam, Meghaloy, Mizoram, Arunachal Pradesh로 쓻겨

갔으며 이들은 아직도 인도국적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 운명에 처한 난민들은 인도의 하층민이 되어 언제 방글라데시로 추방될지도 모르는 비인간적인 생활을 해오고 있다. 국경을 넘지 못하고 남은 50%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치타콩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으나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은 슬픔이 CHT 원주민들의 가슴 속에 쌓이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동파키스탄의 사람들은 독립하여 1971년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였다. 그러자 불행한 이들 부족민들은 새롭게 태어난 이 나라에서 적어도 어느정도는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 풀리기를 바랬다. 그러나 이들 부족민들의 운명은 과거와 같았다. 오히려 방글라데시의 위대한 지도자인 故 Bangabandhu Sheikh Mujibur Rahman 이 CHT의 확실한 지도자이자 1972년 구 방글라데시의 의회 의원인 Mr. Manabendra Narayan Larma에게 CHT 부족민들의 분열된 종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글라데시 헌법의 법조항을 마련하는 대가로 뱅갈인이 될 것을 요구했을 때 상황은 더 악화 되었다.

이러한 민감한 문제로 마음에 상처를 받은 Larma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은신처로 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이러는 동안 CHT에서의 뱅갈인들의 침략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직접, 간접적 지원으로 시작되었고 그 곳에 세운 기관들은 前 대통령인 Ziaur Rahman의 임기동안 오직 부족 공동체의 인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비참한 무대로 변하였다. 방갈 이주민들과 함께 방글라데시 육군에 의해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조직적인 일이 수행돼 왔다. 부족민들의 슬픔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가 악화되고 Shanti Bahini 의 대원이라고 싸잡아 원주민들에 대한 육체적 고문이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1984년까지 10만의 뱅갈인 가구가 CHT의 다른 지역에 정착했다. 이러한 국지전은 지방 정부의 지원으로 침투한 뱅갈인들에 의해서 일어났고 군대는 국지전과 함께 계속해서 몇 달동안 부족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 방화를 저질러 왔다. 이러한 무차별의 고문과 끔찍한 살인이 방글라데시 군대와 뱅갈인들에 의해서 동시에 전개되는 동안 특히 지방에 있는 7만이상의 사람들은 방글라데시 국경을 건너야 했고 인도의 Tripura 에 있는 다른 난민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국경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동산, 부동산을 남기고서 HT의 안전한 곳에 흘어졌다. 이주민들(뱅갈인)은 이들 동산들을 약탈하였고 땅을 팔아먹었다.

2. 난민들의 현황

방글라데시 정부가 20개 항목의 제공한 공약에 의하여 12,222 가구의 64,609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지난 98년 2월 27일 인도의 난민수용소를 떠나 감격스럽게도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공약들의 대부분은 이행되지 않았다.

아래는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들이다.

1) 72가구는 이미 뱅갈인의 소유가 된 택지를 돌려받지 못해서 아직도 Dighinala와 Matiranga

의 캠프에서 머무르고 있다.

- 2) 942가구의 논은 아직도 뱅갈인들이 비워주지 않고 있다.
- 3) 1,331가구의 택지는 아직도 뱅갈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
- 4) 774가구의 밭을 뱅갈인이 점유하고 있다.
- 5) 전체 40개 마을이 아직도 고아원과 뱅갈인의 소유로 있다.
- 6) 9개의 불교 사찰과 화장터, 고아원이 침탈되었고 아직 비워지지 않았다.
- 7) 난민들이 없는 동안 이동되었던 국민학교 전부가 아직 이전의 장소로 복구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 의해서 결성된 대책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통계에 의하면 CHT의 3개의 구역에 있는 내부 난민중 82,020가구들은 아직도 재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후원하에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내부 난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일들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지만 회의하는 것외에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6개월 후에 대책위원회는 많은 난민들에게 오직 세금을 부과할 뿐이었다. 그래서 내부 난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그들의 행동은 바람직하거나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멋대로 지역 전술을 사용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것뿐이다. 본국으로 송환된 94,240가구들과 CHT에 있는 471,200명의 부족 공동체 사람들은 불확실한 생활을 하면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CHT 원주민들의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은 심각한 곤경에 직면해 있다. 현재 이들 난민들은 이주민들의 소유가 된 경작지를 갖지 못하고 돌려받은 땅도 또한 몇 년 동안 경작을 하지 않아서 정글이 되어 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직상태이며 돈을 벌 수도 없다. 바로 이때 정부의 식량배급이 전면 중단되었다. 원주민들은 고산지대에는 산업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공장일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없다.

3. 난민들의 인권 유린

원주민들은 실직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굶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틀림없이 CHT에 있는 원주민들은 위협에 처하고 엄청난 인권유린 상태에서 심각한 이례적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지역에서 테러가 크게 증가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되면 그 결과 군사통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살인, 강간, 약탈은 일상적이고 경찰들은 부족민들에 대한 성희롱을 절차상으로 지연하면서 공평하지 않게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 CHT에는 항상 난민들의 인권유린이 생겨난다.

4. 가능한 NGO의 역할

정치적 상황이 이곳에 유리한 쪽으로 조성되어서 1997년 방글라데시 정부와 Parbattya Chittagong Jana Sanghati Samity (PCJSS)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나는 지금이 NGO가 아래에 열거된 각기 다른 부분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난민들의 거의 전멸된 사회-경제적 구조를 복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평화 협정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

기 때문에 NGO는 정치적 상황이 현재보다 나아지도록 평화 협정이 가능한 빨리 이행될 수 있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1) 사회 사업

- a) 난민들을 위한 저비용 건축 프로젝트
- b) Food for Work (음식을 위한 노동) 를 통한 마을 도로의 건설

2) 농업과 원예

- a) 시장 - 임업 사업
- b) 시장 - 어업 사업
- c) 관개사업
- d) 종묘를 심는 사회적 식수(육림)

3) 진료와 의료 봉사

- a) 무료 의료 봉사 센터의 설립

4) 공공복지

- a) 난민촌의 깊은 상하수도관 시공
- b) 수세식 변소의 설치

5) 지역산물을 이용하는 산업

- a) 과일 가공 공장 건설
- b) 삼림 가공 공장 건설
- c) 통조림 공장 건설
- d) 직물 공장 건설

6) 교육

- a) 초등교육의 실시
- b) 기초단계에 해당하는 상설 학교의 설립

만약 위의 프로젝트가 적절한 단계로 이행된다면 난민들과 CHT에 있는 다른 거주자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젊은 연설을 통해서 나는 아시아의 NGO 대표님들을 정중히 초대하는 바이며 CHT 방글라데시의 인간적 생활을 위한 전 세계인들의 도움의 손길과 가능한 모든 협조는 이후 CHT 지역의 NGO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Parbattya Bouddha Mission (PBM)은 난민들의 아이들에게 은신처를 위한 고아원과 교육을 위한 상설 학교를 건설하였다. 여기에다 PBM은 직업훈련센터, 컴퓨터 교육, 선반의 조작, 구멍뚫기와 용접기계, 양재와 자수들을 난민들과 빈곤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Australian High Commission (AHC)의 재정적 도움으로 1,000마리의 암염소를 500가구에 나눠주었다. 나는 PBM은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어떠한 프로젝트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기원하며....

버어마 난민의 실태와 NGO의 역할

Aung Myo Min

Director of the Human Rights Documentation Unit of
the National Coalition Government of the Union of Burma (NOGUB)

버어마의 난민 상황과 그것이 이웃 국가들, 더 나아가 아시아 전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발 표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988년 조국을 떠나 정치적 난민으로서 태국으로 피신해야 했던 저이기에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발표하기에 매우 적절한 주제이다. 그 때 이후로 저는 버 어마를 탈출해 외국에 있는 난민들의 상황을 예의 주시해 왔으며 외국에 있는 버어마 난민들의 복지와 보호를 위해 긴밀히 활동해 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발표하게 될 이야기는 난민으로서의 제 삶의 일부이면서 난민들과 함께 한 저의 활동이기도 하다.

먼저 저는 지난 2월에 만났던 Karen 주의 한 난민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 여인은 45세로서 Karen 주의 Papun 지역 출신이며 현재 태국 내의 난민 수용소에 살고 있다. 그녀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군부의 강제노역, 강제이주 그리고 즉결 처형 때문에 태국으로 도망쳤다고 제게 말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다. “내 남동생은 마을에서 끌려나가 마구 폭행을 당했고 의식을 잃었다. 군대는 마을 사람들에게 강제로 지켜보게 하고 동생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군인들은 현장에 시체를 내버려 두었다. 사람들은 감히 시체를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그저 바라 볼 수 밖에 없었다. 군대는 시체 둘레에 지뢰를 묻었다. 마을 사람들은 시체를 거둘 수 없었다. 난 동생의 시체를 봤을 때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도 동생과 똑같은 운명을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난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난 울지도 말하지도, 먹지도 못했다. 병사들은 나중에 마을 전

체를 불질렀고 우리들을 강제로 자신들의 부대 근처로 이주시켰다. 내 가족 전체가 울면서 마을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비극이 오로지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버어마의 많은 소수 민족들이 경험한 실화들 중의 하나이다. 비슷한 사건들, 더 비극적인 더 많은 사건들이 지금 버어마의 많은 지역에서 군부의 야만적 탄압 하에 벌어지고 있다.

1. 사태의 배경 및 난민이 되는 이유들

국가 평화와 개발 위원회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 국가 법질서 회복 위원회 SLORC의 후신)에 의해 미얀마로 이름이 바뀐 버어마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PDC 정권은 1988년 유혈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그 과정에서 거리에서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수천명을 살해했다. 민간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만연하다. 수 천명의 정치 운동가들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고 이들은 그곳에서 야만적인 고문을 당하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사망하기도 하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Daw Aung San Suu Kyi 여사가 이끌고 있는 야당인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동맹)은 SPDC의 탄압을 받고 있다.

SPDC는 단지 버어마 국내의 정치적 저항만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또한 무장한 소수 민족 집단에 대해서도 무력 공세를 가하고 있다. 버어마의 소수민족 집단들은 1949년 영국식 민통치가 끝난 이후 자치를 추구해오고 있는 무장 소수 민족집단에 대한 게릴라 진압 작전에 의해 종종 체포되고 있다. 소수 민족들은 SPDC의 학대, 특히 주민 강제 이주, 강제 짐꾼노역, 그리고 토지 및 재산 몰수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군사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SPDC군인들은 강간, 즉결 처형, 불법 체포, 고문, 구타, 그리고 강제 짐꾼 노역과 같은 만행을 자행했다.

SPDC의 처형은 대부분 소수민족인들, 무장 소수민족저항집단의 조직원 혹은 그들의 동조자 혐의를 받는 이들, 강제 노동과 짐꾼 노역에 동원되는 부락민들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소수민족인들은 주로 중앙 버어마 평원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동안 증거나 해명도 거의 혹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또 약식으로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고, 강제이주 당했다. 즉결 처형은 아무데에서나, 아무때나 사병들 뿐 아니라 군관리들에 의해서까지 저질러지고 있다. 즉결 처형은 또한 강제 노동이나 짐꾼 노역을 목적으로 부락민들을 생포하는 과정에서도 자행된다. 짐꾼이 탈출하거나 과로나 질병으로 더 이상 노동할 수 없게되면 이들은 거의 언제나 구타를 당하고 종종 살해되거나 식량과 약도 없이 버려진다. 여자들은 흔히 강간 당한 후 군인들에 의해 살해된다.

주민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또 한가지 요소는 광범위한 강제노동 동원이다. 민간인

들, 특히 소수 민족인들은 군부에 의해 군부대용 짐꾼 역할을 하거나 도로 및 기타 기간 시설 공사를 위해 일하도록 강요 당하고 있다. 버어마에서 군부에 의한 무임금 강제노동 동원은 국제노동기구 ILO와 같은 국제 인권 단체들의 오랜 관심사가 되었다. SPDC는 과거에 군부와 다양한 소수 민족 단위의 무장집단들 간의 충돌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기간시설을 개선하려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정책의 결과로, 수천명의 소수민족 민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정기적으로 기간시설 공사에서 일하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무임금 노동은 강제 짐꾼노역이다. 이는 군부가 지방을 순찰하면서 탄약, 식량 및 기타 장비들을 운반하기 위해 인력이 필요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종종 소수민족인들이 희생된다. 군부가 운반노역을 위해 사람들을 생포하면, 군부는 이들을 일정기간 동안 잡아두고 사실상 임의로 억류를 한다. 비록 도로나 다른 공사에 동원되는 민간인들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치욕적인 대우를 받지만, 짐꾼들은 구타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대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일이 훨씬 더 흔하다.

지난 3년간, SPDC는 소수민족지역에서 대대적인 규모로 강제 이주를 실시했다. 강제 이주는 수십년 간 SPDC의 전략의 일환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그 규모는 1996년 한해 동안 극적으로 증가했고 줄어드는 기미 없이 계속되고 있다. SPDC는 강제 이주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두 가지 주요한 경우에 이용한다. 첫째는 이주 당한 부락민들은 개발 프로젝트에 무임금 노동자로 동원되며 두 번째로, 부락민들은 소수민족 저항에 대한 지지를 막기 위해 게릴라 저지 작전의 일환으로서 이주를 당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천명의 Karen족, Karenii족, Shan, Mon 그리고 Tavoyan 족 사람들이 이주를 당했다. SPDC가 이주지역에서 부락민들을 학대하고 이주 지역들의 조건이 열악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거나 이주 명령을 아예 피해서 곧바로 숲이나 국경으로 도주하게끔 만들고 있다. 이런 대규모 이주에는 종종 다른 형태의 인권 남용이 따르게 된다. SPDC는 "4중 차단"이라고 알려진 전략을 써서 무장저항조직들과 현지 민간인들 사이의 정보, 식량, 자금, 보충 병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시도한다. 이주명령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집에서 퇴거당한 후에 SPDC 병력이 광범위한 지역들을 "자유발포 지대"로 선언한다. 즉, 누구든지 자기 집에 남아 있으려 한다면 발견 즉시 사살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락민들은 저항집단들이 항복할 때까지 귀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경고를 듣는다. SPDC는 이 정책을 일컬어 "바닷물을 다 빼버려서 그 어떤 물 고기도 헤엄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사실, 소수민족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이주는 이웃 국가인 태국으로 난민이 새롭게 유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버어마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주들에 만연한 인권 남용은 이웃 국가들, 특히 태국,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이들 나라들은 모두 대규모 난민 유입에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태국 수용소에만 십만이 넘는 난민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버어마 내에는 국내적으로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이 백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직적 인권 남용은 수백만의 버어마 사람들을 그들의 집으로부터 몰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도피가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많은 난민들은 국경으로 향한 피난길에서, 또는 국경을 넘는 그 순간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게 되고 나중에는, 예를 들어, 망명을 요청하는 국가로부터 강제 송환을 당하는 것

과 같은 더 많은 인권 침해에 직면하게 된다. 버어마 난민들은 이중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즉, 국내에서, 그리고 국외의 난민으로서이다.

2. 버어마난민에 대한 태국 정책

1984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태국 당국은 버어마를 탈출해 밀려들어오는 카렌 난민들이 태국 서쪽 국경을 따라 위치한 난민 캠프에 머물도록 허용했다. 태국이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정이나 그에 따른 1961년 의정서 서명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프로그램의 정부간 집행위원회 (Inter-government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Program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UNHCR Excom)의 회원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허가없이 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난민들은 '불법 이민자'로 낙인 찍히고 언제라도 출신국가로 송환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유엔고등판무관 (UNHCR)의 국경지대 난민캠프 방문은 때때로 허용되지만 태국 당국은 태국 단체들만 난민들을 돌보도록 허락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은 UNHCR이 국내에서 제한된 주둔은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태국은 UNHCR의 주둔이 더 많은 망명 요청자들을 끌어들이고, 난민 캠프가 더 영구적으로 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태국 정부는 UNHCR이 국경지대에서의 역할을 중대시키도록 허락할 경우 버어마 당국을 자극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비록 UNHCR의 활동이 인도주의에 입각하고 비정치적이긴 하지만, 버어마 정부는 이 기관을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비판해온 서방을 대표한다고 보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태국은 변덕스런 그 이웃국가를 자극할 경우 기존의 그리고 잠재적인 경제 협정들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또한 태국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종종 당혹스런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며, 오직 버어마 내전이 끝난 후에 난민들을 귀환시키는 것이 안전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왕실 태국 군대는 국경을 가로질러 가해지는 버어마의 공격으로부터 캠프에 있는 십만명의 난민들을 보호해내지 못하다는 점증하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미 Huay Kaloke (속칭 Wangka), Bae Klaw (속칭 Mae La) 그리고 Mawker 캠프에 대한 공격이 반복되었으며 다른 수용소들은 현재 앞으로 공격이 더 있을 것을 우려해 경계태세에 있다. 현재 타이 정부는 UNHCR이 태국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난민들에 대한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고, 캠프가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때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게 해주길 바라고 있다.

1997년 11월 태국 정부가 바뀌면서 새 정부는 인권 원칙에 입각하여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태국으로 들어가려는 새로운 난민들은 태국 정부가 자신들의 망명요청을 인정하기를 꺼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태국 당국은 '전투 피난자'들에게만 망명 승인을 내릴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명확히 당면한 무장 전투에서 도망친 이들로 해석되었고 소수민족 군대들은 이미 패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새로이 넘어오는 난민들 중 이런 망명 기준에 부합한

다고 간주되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 결과 많은 난민 수용소에서 사실상 ‘새로 넘어오는 난민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책’을 채택했다. 새로운 난민들은 많은 인권 남용 실화와 함께 계속해서 국경을 넘어 카렌 주 북쪽 근처의 캠프로 들어왔다. 그러나 수많은 새 난민들이 여전히 캠프밖에 남아있건만 아직까지 이들의 미래를 위한 어떤 확실한 정책도 나와 있지 않다.

1998년 3월, 태국 총리 Chuan Leekpai는 유엔 고등판무관 (UNHCR)이 난민 원조를 감독하고 수용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1998년, 왕실 태국 정부는 태국과 버어마 사이의 국경지대에 흩어져 있는 13개 난민 캠프에 수용된 약 10만 여명의 버어마 난민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UNHCR의 도움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UNHCR은 이 요청을 수락했고 UNHCR의 역할이 주로 난민보호활동 감시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고 결정했다. 그 이후로, UNHCR은 Mae Sod, Mae Hong Son, 그리고 Kanchanaburi 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파견해 왔으며, 수용소 출입을 확보했고 난민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NGO들의 역할은 자신의 의지에 반한 강제 송환으로 부터 난민들의 안전을 보호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버어마난민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권남용과 버어마의 정치적 불안이다. 버어마의 난민 문제는 이 나라의 내전을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 SPDC가 자국민들에게 엄청난 인권남용을 자행하고 있고 Daw 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민주세력, 소수민족 세력, 그리고 SPDC의 진정한 3자 대화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한, 이웃 국가들로의 난민들의 유입은 계속 될 것이다. 민주정부가 구성되고 버어마 내에 시민 사회가 설 때까지,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들 난민들에게 있어서 안전한 귀향이란 없을 것이다. 저는 NGO들이 버어마 내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 버어마의 군사정권에 집단 압력을 가한다면 버어마를 민주적인 새로운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 버어마 난민들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지원,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을 갈망하고 있다.

북한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NGO 역할

발제1

중국 체류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발육 상태와 그 기능적 함의

박순영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Sunyoung Pak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들어가는 말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북한어린이 기아문제 연구회는 북한어린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26일에서 8월 5일 사이에 중국의 북한접경지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조사 기간에 수집된 중국 체류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 30명(이하 북한어린이로 칭함)의 성장 발육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본고는 북한의 식량위기가 어린이의 성장 발육과 건강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나아가 성장 발육기에 심각한 영양 결핍을 경험한 어린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기능적 장애를 보일 것인지를 추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구호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더불어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집단의 특성

중국에서 본 북한 난민의 생활

김길선 (탈북자 동지회, 99년 귀순)

나는 북조선 평양에서 인민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거친 후 1972년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고전 문학과에 입학하여 1977년 4월까지 학과과정을 마친 후 1977년 5월부터 1997년 6월까지 황해남도 연안군에서 3대 혁명소조로 활동하였다. 그후 북한의 국방과학연구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출판사 기자로 임명되어 1997년 12월까지 17년간 기자로 일하였다. 사적자리에서 김정일의 부화방탕한 생활에 대해 말한 죄로 국가보위부에 연행되어 엄중 취조를 받은 후 북한 사회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탈북을 단행하게 되였다. 1998. 8. 15 탁수

탈북 후 본인은 중국에서 17개월을 방황하면서 탈북동포들의 인권 유린 상황을 수없이 목격하였다.

북한 당국자들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탈북한 동포들을 노예 사냥하듯이 잡아들이지 못해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본인도 북한 보위부의 마수에 수차 걸려들 위험을 간신히 피해 살아남았다.

1998년 5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위원 선거를 앞두고 탈북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북한 당국의 행위는 극치를 이루었는데 그때 중국의 연길시에서만도 하루에 30~40명씩 탈북자들을 불들어서 북한으로 끌어갔다. 그때 세 살 난 어린애를 가진 여성도 있었는데 그는 아이만이라도 중국에 떨구어 두 게 해달라고 피를 토하며 사정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본 중국공안부문의 한 사람은 눈물이 나와서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말하였다.

본인은 이미 북한에 있을 때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야만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 1995년 1월경 남양에 식량구입을 갔었는데 그때 남양보위부에서는 탈북했던 가족 일행을 도문에서 인수받아서 그들의 목에 《조국 반역자》라는 간판을 걸리우고 온 남양시를 끌고 다니면서 《조국 반역자》는 무자비하게 처형한다는 선전사업을 하였었다. 그때 그 가족에는 대학을 다니던 처

녀애도 있었고, 12살 난 총각에도 있었다. 그들이 목에 《조국 반역자》 간판을 걸고 머리를 푹 숙이고 걸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들 모두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한다.

1997년 3월 본인이 혜산에 갔었는데 그때 혜산 교두에서 본인은 북한 안전원들이 중국에서 인수받아 넘겨온 탈북자들 30여명을 집단 구타하는 광경을 공포에 질려 목격하였다. 안전원들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입고 온 옷을 몽땅 벗기고 그 추운 겨울에 팬티만 입히우고 구둣발로 수 없이 걷어찼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중국 교포들도 북한안전원들은 사람새끼들이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욕질을 하였다.

아이도 있고 할머니도 있었음 → 대 생사를 걸고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는 시 당면 → 이들이야말로 난민

북한에서는 탈북한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정치범으로 규정하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퍼붓는다. 그러나 북한 인민들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하고 있다.

탈북 동포들은 중국에서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범죄자들의 인신매매물이 되고 있다.

본인이 숨어있던 중국 연길시 어느 유홍업소에는 북한 무산시에서 넘어온 처녀 2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은 탈북하자마자 중국의 인신매매 범죄 집단에 걸려들어 대련까지 팔려 갔다가 겨우 도망쳐 왔다고 한다.

본인은 중국에서 길림성 왕천현 백초구에도 숨어 있었는데 그 동네에는 탈북해서 팔려온 북한 처녀 애들이 20명이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팔려 온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서나 돈을 벌어서 북한의 부모들을 살리겠다고 애써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소원은 단 하나. 제발 잡혀가지 않고 국적을 가지고 안전하게 살면서 북한의 부모형제를 살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꿈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운명을 가지고 하루 한시도 발 편히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 본인은 중국에서 탈북했다가 다시 불들려 가서 죽게 매를 맞고 겨우 풀려나서 다시 탈북한 소년들도 여러 명 만났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은 그래도 실컷 때리고 놔주지만 어른들은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간다고 하면서 지금은 자기가 아이인 것도 다행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탈북자들의 인권유린 상황은 수 없이 많다. 탈북자들이 인권유린을 저지시키는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차적인 문제이다. 오늘 탈북자들의 인권유린 상황을 저지시키는데서 초보적인 것은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대회는 의의가 크다고 본다.

조사대상은 조사자가 연길시에서 만난 북한어린이 30명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거리에서 유랑하고 있는 어린이들로서 총 20명에 해당되며, 이외에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가 7명, 가족과 함께 월경하여 연길에 체류하고 있는 어린이가 3명이다. 이들의 성별 연령별 구성은 표1에 요약되어 있다.

표1. 조사 대상 집단의 연령별 성별 구성

연령	남자	여자	합계
4세	1 (4.32)		1
7세		1 (7.46)	1
10세		1 (10.89)	1
11세		1 (11.47)	1
13세	3 (13.51)	1 (13.96)	4
14세	6 (14.49)	2 (14.36)	8
15세	5 (15.61)		5
16세	7 (16.25)		7
17세	2 (17.43)		2
합계	24	6	30

표1에서도 나타나듯이, 조사 대상이 된 북한어린이는 대다수가 남자아이이다. 여자의 경우는 오빠와 함께 월경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현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실제로 거리에서 걸식하는 여자 어린이를 발견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오빠와 함께 월경한 한 명의 여자아이(11세)를 제외하고는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데 반해,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은 13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들이다.

이들이 집을 떠나 생활한 기간은 불과 며칠에서부터 4년까지 다양하다.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대개의 어린이가 국경을 한 차례 이상 넘나들었으며 체포되어 북한의 수용시설에 머무른 경험이 있는 어린이도 다수인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수용시설에서의 감시가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설 수용 어린이와 길거리의 아이들 27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형편을 조사한 결과는 표2에 요약되어 있다.

표2. 조사 대상 어린이의 부모들

	특이 질병보고 없음	사망	실종	병중	정보 없음	계
어머니	13	5	3	3	3	27
아버지	12	6	2	1	6	27

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는 부모 모두 생존한 경우가 5명,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가 2명이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시설은 고아원의 성격과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사설교육기관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어린이의 경우라도 공식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막혀 있는데다가 남의 눈 때문에 통학을 할 수도 없는 관계로 아이를 이런 시설에 수용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의 부모 생존율이 거리의 아이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반면에 길거리의 아이들 20명 중, 부모의 상태가 확인된 경우는 14명인데, 이 중 한 명을 제외한 13명 모두 부모 중 적어도 한 쪽이 사망, 실종, 또는 병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20명은 모두 학령도 출신인데, 특히 함북 무산에서 온 어린이가 16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무산의 중심적 산업은 광업이다. 거리 어린이들 부모의 직업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부모 모두가 광산 노동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량 배급이 끊어지면서 광산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특히 심각했으며 이런 곤경 가운데 부모 중 한쪽이나 양쪽이 사망, 실종 또는 병을 앓은 것을 계기로 부모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된 어린이들이 주로 집을 나와 떠돌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성장 자료 수집과 분석 결과

이 3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키, 몸무게, 피하지방두께, 팔둘레 등을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국제적 표준 절차에 따랐으나(Lohman 등 1988) 현지 사정상 장비는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였다(키는 철제 줄자, 몸무게는 스프링식 체중기, 팔둘레는 천줄자를 사용하여 측정. 피하지방두께만 국제 규격의 측정기 사용). 이 자료 중에서 국제 준거치와 한국 평균치가 출판되어 있는 키와 몸무게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필자는 북한어린이 신장과 체중 자료를, WHO의 권고(WHO 1978, 1986)에 따라, 미국 NCHS(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의 성장 준거 곡선(Dibley 등 1987; Hamill 등 1977)에 비교하여 북한어린이의 성장 상태를 평가하였다(계산에는 Epi Info Version 6.04b, CDC & WHO 1997 사용).

신장과 체중으로 집단의 성장 상태를 평가하는 지수로는 두 가지를 사용하였는데, 키에 대비한 몸무게(weight for age: WA)와 나이에 대한 키(height for age: HA)이다. 대개 Z 점수(표준편차점수)¹⁾가 -2 이하인 상태(준거 집단의 하위 약 2.2%가 여기에 속함)를 중등도의 영양실조로, -3 이

하인 상태(준거 집단의 하위 약 0.013%가 여기에 속함)를 심각한 영양실조로 평가하는 것이 관례이다(WHO 1978, 1986).

나이에 따른 키(HA)와 몸무게(WA)의 표준편차점수(Z-score)를 계산한 결과를 표3에 요약하였다. 또한 Z-score -2 이하로서 성장지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백분율을 표4에 요약하였다. 이 어린이들의 키는 대체로 준거집단의 -2표준편차 이하에, 체중은 -2와 -1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체중보다는 신장감소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결과로, 나이에 따른 키에서의 성장지체아율(83.3%)이 나이에 따른 체중에서의 성장지체아율(30.0%)보다 월등히 높다.

표3. 북한어린이의 평균 성장발육지수

연령	남자		여자	
	HAZ	WAZ	HAZ	WAZ
4세	-1.82	-1.03		
7세			-1.44	-1.02
10세			-1.90	-1.54
11세			-3.59	-1.67
13세	-3.27	-2.34	-2.67	-0.76
14세	-2.36	-1.66	-2.51	-1.50
15세	-2.50	-1.85		
16세	-3.43	-2.02		
17세	-2.77	-1.96		
총평균	-2.83	-1.89	-2.35	-1.33

표4. 북한어린이의 성장지체아율 (% Z-score < -2)

	남자	여자	남녀합계
연령별 신장(Height for Age)	87.5	66.7	83.3
연령별 체중(Weight for Age)	37.5	0.00	30.0

계산한다. 예를 들어 Z 점수가 -2라는 것은 그 개체의 측정치가 준거 집단의 중앙값보다 2 표준편차만큼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남북한 어린이 성장 특성 비교

표5와 표6에 북한어린이의 키와 체중을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동년대의 남한어린이의 1997년 평균치(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97)와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어린이는 남한어린이에 비해 작게는 7.5cm, 크게는 26.7cm 키가 작고, 체중도 1.7kg에서 20.5kg까지 차음을 알 수 있다. 키의 차이는 시춘기에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만성적 영양결핍 상태의 북한어린이가 남한어린이에 비해 성숙이 지연되면서 사춘기에 늦게 진입한 결과로 판단된다. 남한의 여자 어린이는 11세에서 12세 사이에, 남자 어린이는 13세에서 14세 사이에 신장 급격 성장기에 도달한다(박순영 1996). 따라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상대적으로 발육이 늦은 북한어린이와의 키에서의 차이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5. 북한어린이와 남한어린이의 평균 키(cm)비교

연령	남자			여자		
	북한	남한	차이	북한	남한	차이
4세	97.3	105.0	7.7			
7세				115.0	122.5	7.5
10세				130.8	141.1	10.3
11세				123.2	147.1	23.9
13세	132.1	158.8	26.7			
14세	146.4	165.7	19.3	142.4	155.4	13.0
				144.2	158.2	14.0
15세	153.1	168.4	15.3			
16세	150.3	170.1	19.8			
17세	158.5	170.7	12.2			

표6. 북한어린이와 남한어린이의 평균 체중(kg)비교

연령	남자			여자		
	북한	남한	차이	북한	남한	차이
4세	15.3	17.0	1.7			
7세				20.0	23.8	3.8
10세				27.0	34.6	7.6
11세				28.0	39.0	11.0
13세	29.9	50.4	20.5			
14세	40.2	54.8	14.6	44.0	47.6	3.6
	15세	44.2	56.6	12.4		
	16세	45.6	59.6	14.0		
	17세	50.0	60.4	10.4		

그림1, 2, 3, 4는 조사대상어린이의 키와 체중을 표준과학연구원이 제시한 1997년도 동년배 남한 어린이의 키와 체중 5 백분위수와 50 백분위수에 비교한 결과이다. 키를 보면 남자 어린이는 모두 남한의 5 백분위수 아래에 속하며, 여자 어린이도 7세와 10세의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마찬가지이다. 체중은 대개 남한의 5 백분위수보다 약간 무겁거나 가벼운 정도이다.

그림1. 북한어린이 평균 키와 남한어린이 키 5 백분위수와 50 백분위수와의 비교(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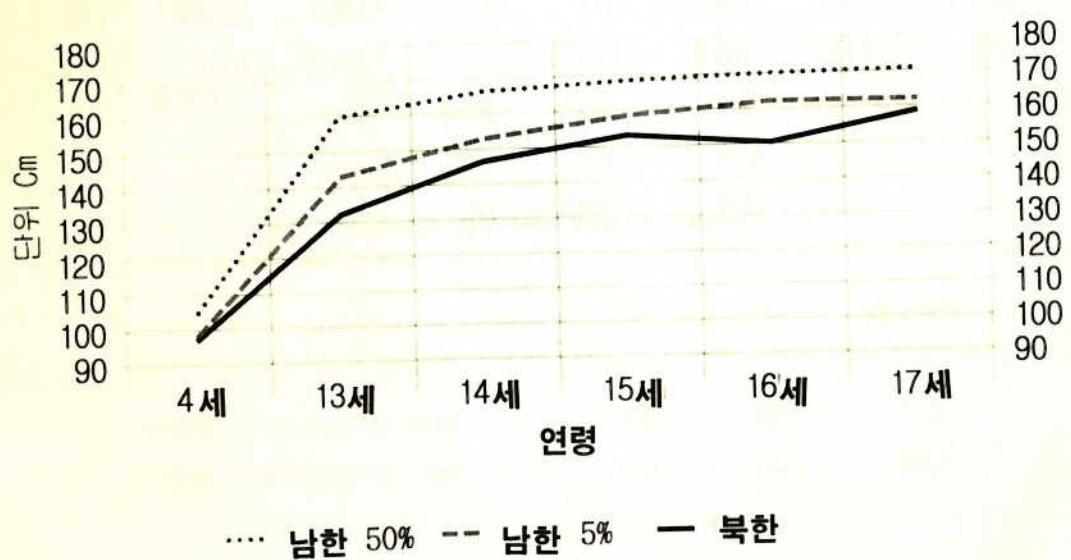


그림2. 북한어린이 평균 키와 남한어린이 키 5 백분위수와 50 백분위수와의 비교(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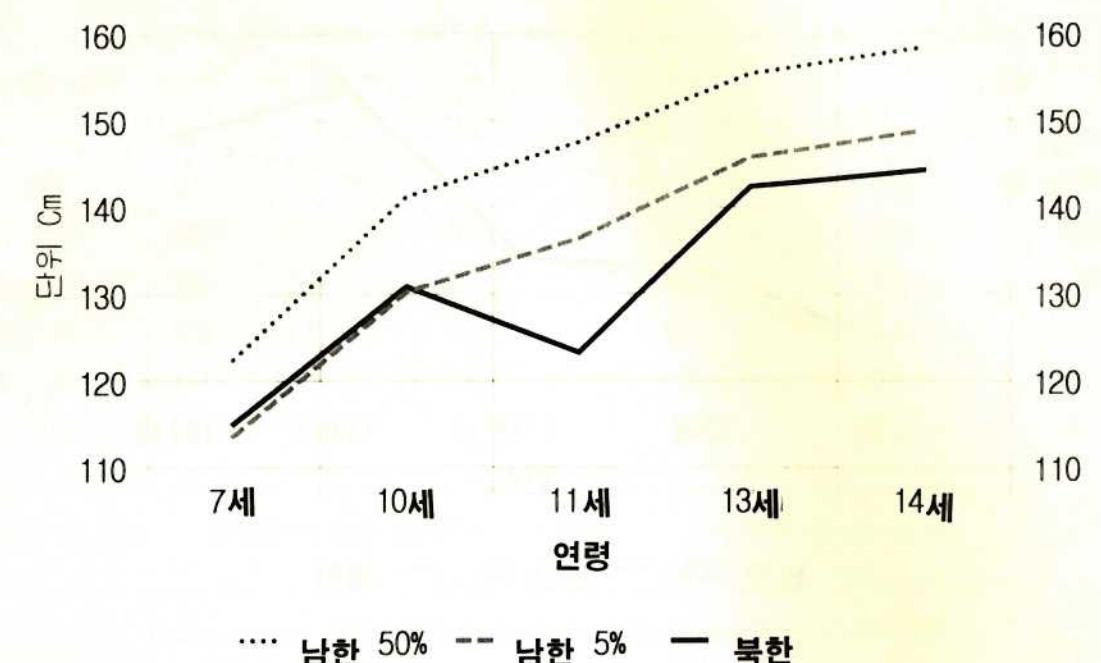


그림3. 북한어린이 평균 체중과 남한어린이 체중 5 백분위수와 50 백분위수와의 비교(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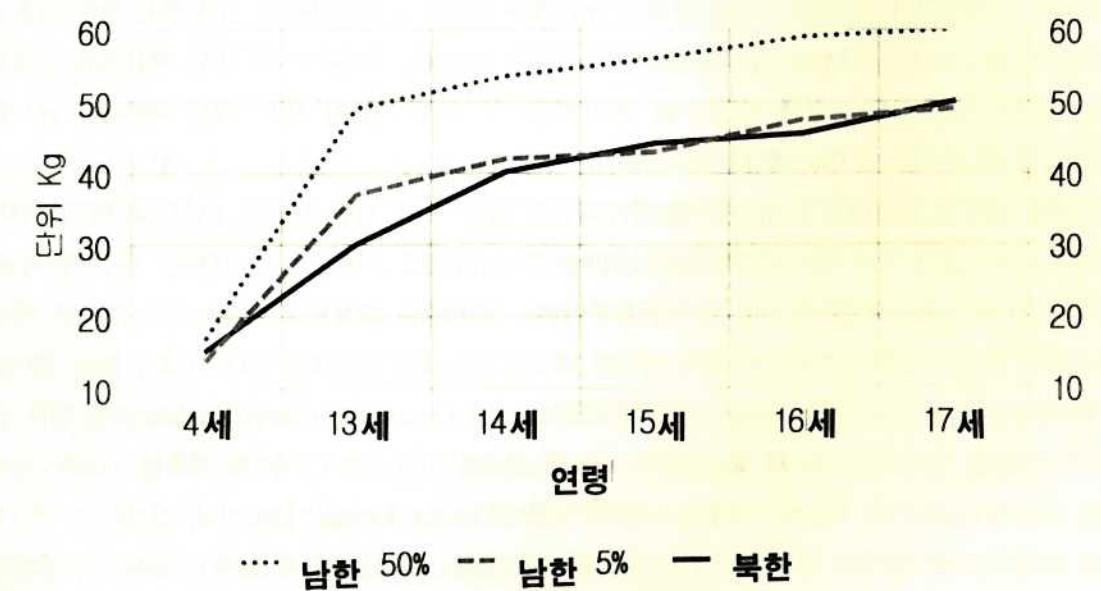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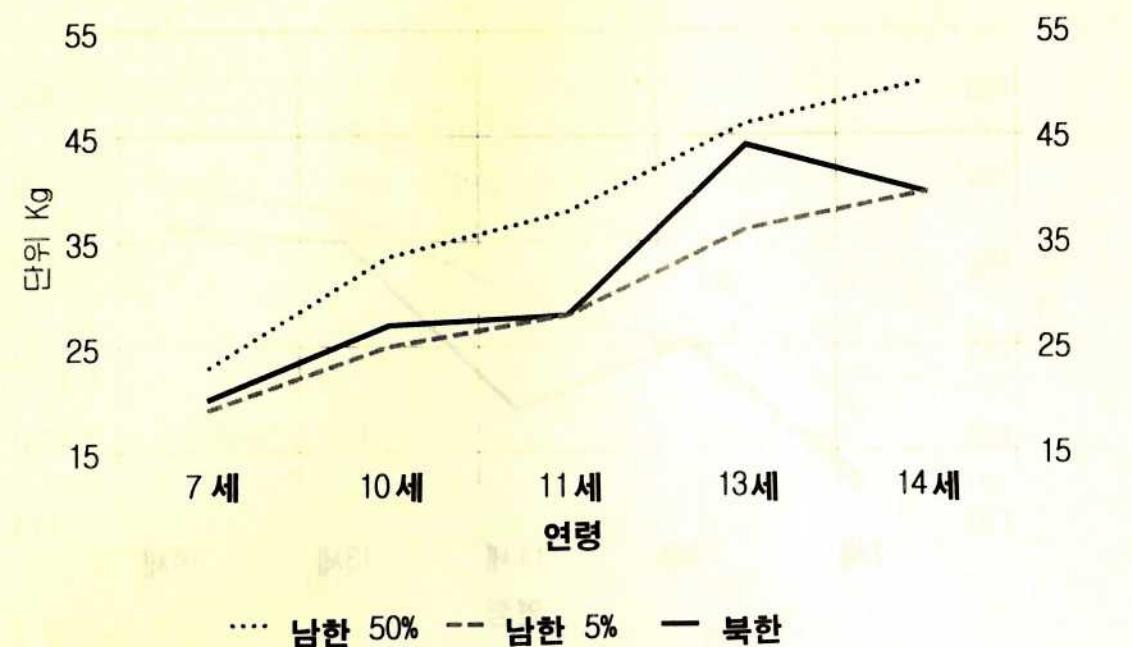


그림4. 북한어린이 평균 체중과 남한어린이 체중 5 백분위수와 50 백분위수와의 비교(여자)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 북한어린이와 청소년은 국제적 준거에 비추어 기에서의 성장부진이 심각하다. 또한 남한의 동년배와 비교해도 성장부진이 현저하다. 특히 사춘기 전후하여 이러한 남북한의 차이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조사 대상 어린이가 키에서 북한 평균과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지 알 길이 없으므로, 현재 사춘기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남북한 키 차이를 이 자료를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다.

장래의 남북한 청소년간의 키 차이를 추정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EU/UNICEF/WFP가 발표한 북한어린이 영양상태 보고서이다(EU/UNICEF/WFP 1998). EU 등은 1998년 전국적인 수준에서 표본 추출한 6개월에서 7세 사이의 북한어린이 1792명을 대상으로 영양상태를 조사한 적이 있다(표본 추출과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U/UNICEF/WFP 1998 참조). 공동 조사단은 북한어린이 신장과 체중 자료를 미국 NCHS(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의 성장 준거 곡선(Dibley 등 1987; Hamill 등 1977)에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지표는 키에 대한 몸무게(weight for height: WH)와 나이에 대한 키(height for age: HA)이다. 전자는 어린이가 현재 키에 비하여 얼마나 말랐나를 나타내는 것이며 급성 영양실조의 지표이다. 후자는 어린이가 나이에 비해 얼마나 키가 작으나를 나타내는 것으로 만성적인 영양실조수준을 나타낸다(Waterlow 1972). 표7에 영양실조로 평가된 북한어린이의 백분율과 평균 Z-score가 연령별, 성별로 요약되어 있다.

표7. 북한어린이 연령별 성별 영양실조율

연령(개월)	표본크기(1762)		급성영양실조(%)		만성영양실조(%)	
	남(887)	녀(875)	남	녀	남	녀
6<12	61	83	19.1	16.5	23.0	8.2
12<24	146	151	36.5	25.8	45.6	51.1
24<36	159	133	25.3	14.2	63.7	60.2
36<48	139	125	16.3	9.2	74.6	75.6
48<60	141	125	14.6	3.0	80.0	75.0
60 - 84	241	258	11.7	4.2	76.4	73.4
남녀 총 평균			급성영양실조율=15.6%	Z=-0.95	만성영양실조율= 62.3%	Z= -2.57

(adapted from EU/UNICEF/WFP(1998) Nutritional Survey of DPRK)

남북한 어린이의 성장 자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으면 그 차이가 보다 선명해지고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쉬울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EU/UNICEF/WFP 보고서는 NCHS 성장 준거 곡선에 기반하여 계산한 Z 점수를 연령과 성별 구분 없이 총 평균으로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이 수치를 가지고 북한어린이의 신장 평균치를 추정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제시한 1997년의 남한어린이 평균치와 비교한 결과, 만7세의 나이에 남북한 어린이간의 키 차이는 남녀 모두 최소 12cm정도로 나타났다(박순영 1999 참조). 이번이 없는 한, 이 연령 대의 남북한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는 영양결핍에 따른 성장 부진에 성숙속도의 저하가 부가적으로 작용하여, 남북한 청소년간의 키 차이가 극대화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7세의 북한어린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의 남북한 청소년간에 나타나는 평균 키 차이는 적어도 12cm가 넘을 것은 확실하다.

어린 시절의 성장은 환경의 영향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현재는 북한의 어린이가 경험하고 있는 식량 부족 사태 때문에 남북한의 차이가 크지만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 유전적 소양의 작용으로 그 차이가 줄어 들 수도 있다(Martorell 1984; Marshall & Tanner 1986 참조). 그러나 “따라 잡기(catch-up)” 성장이 어느 정도로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 후의 성장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Tanner 1986 참조). 따라서 앞으로의 북한 식량 수급 상황의 호전과 일반적인 보건 의료 수준의 향상이 남북한 신체 크기 감소의 관건이라 보인다.

3. 결론 및 구호 방안에 대한 제언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중국 체류 탈북 어린이는 대표성이 없으므로 북한어린이 전체의 수준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성장 발육 상태를 보이고 있는 어린이들인지 평가할 길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나 장차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자료는 중국 체류 탈북 어린이의 생활상과 복지수준의 한 지표로서 이용될 수도 있다. 북한의 기근이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만(예: EU/UNICEF/WFP 1998)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영유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상태를 파악해야 기근의 장기적 영향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북한에서 식량 부족이 시작된 지가 적어도 수년은 되었으며, 지금은 응급한 기아 단계를 지났다고 해도 만성적 식량부족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심각한 영양결핍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만성적 식량부족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성장 경향은 어떨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관련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주 조악한 수준에서나마 북한어린이의 성장발육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실태 조사 경험에 기반하여, 중국 체류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호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참고해야 할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다수는 길거리에서 노숙과 구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시설 수용 어린이나 부모 동거 어린이는 이들보다는 형편이 좋다고는 하나 숨어살기는 마찬가지이다. 공포가 일상화된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정된 생활 공간의 확보일 것이다. 안정된 공간이 확보되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공급과 의료 지원을 통해 성장과 건강 수준 회복이라는 즉각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호 활동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한다는 점일 것이다. 아직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족과는 유리된 체 길거리를 떼지어 다니며 때로는 구걸로 때로는 거짓말로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에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하루하루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문제는 이들이 장차 독립적인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현재 10대 중반에서 후반에 있는 이 청소년들이 거리의 어린이에서 거리의 노숙자나 부랑자로 될 날이 멀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문제는 확대 지속될 뿐이다. 따라서 안정된 생활 공간을 확보하여 장래의 삶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가족적 상실을 경험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를 축소시키는 방안일 것이다.

교육 기회의 제공이란 길거리의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현재 부모와 함께 탈북하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교육을 위해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오로지 아이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직 어린아이를 이런 시설에 맡겨 놓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만나면서 지내는 것이다. 숨어사는 이들이 이웃의 눈치가 보여 내놓고 아이를 시설에

통학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설에서의 교육은 선교를 제일의 목적으로 교육 내용이 짜여져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개인적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물론, 어린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북한 내부의 경제 위기 해소에 따른 어른 문제의 해결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근원적인 해결에 도달하기 전에 현재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중국 체류 탈북 어린이를 위한 당장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영양, 건강, 교육, 이 세 가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이 어린이들에게 최소한의 미래를 줄 수 있고 더불어 장기적인 사회적 문제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인용 문헌

- 박순영 (1996) 한국 도시 아동의 성장 발육 상의 특성과 행동 발달간의 상관관계. *한국문화인류학 제 29집 2호*.
- 박순영 (1999) 북한 어린이 기아 문제 연구의 제 차원: 북한 어린이 성장 발육의 특성과 그 가능성적 함의. 제31차 한국문화인류학회전국대회 발표논문집.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97) 국민표준체위 조사 보고서, 국립기술품질원.
- 탈북 소아과 의사 L씨 면담 자료 (1999. 4. 8) 미출판자료.
- Barrett DE, Frank DA (1987) *The Effect of Undernutrition on Children's Behavior*. New York: Gordon and Breach.
- Beaton GH (1989) Small but healthy? Are we asking the right question? *European J Clin Nutr*, 43:863-875.
- Cassidy CM (1991) The good body: when big is better. *Medical Anthropology*, 13:181-213.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SA,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1997). Epi Info 6, Version 6.04b
- Chandra RK (1991) Nutrition and immunity: lessons from the past and new insights into the future. *Am J Clin Nutr* 53:1087-1101.
- Chavez A, Martinez C (1984) Behavioral measurements of activity in children and their relation to food intake in a poor community. In *Energy Intake and Activity*. E. Pollitt and P. Amante eds. pp. 303-321. New York: Liss.
- Clark GA, Aldwin CM, Hall NR, Spiro A, Goldstein (1989) Is poor early growth related to adult immune aging? A follow-up study. *Am J Human Biology* 1:331-337.
- Cravioto J, Arrieta R (1986) Nutrition, mental development, and learning. In *Human Growth: A Comprehensive Treatise*, 2nd ed. Vol. 3. F. Falkner and J. M. Tanner, eds. pp. 501-536. New York: Plenum Press.
- Dibley MJ, Golsby JB, Steahling NW, Trowbridge FL (1987) Development of normalized curves for the international growth reference: historical and technical considerations. *Am J Clin Nutr*,

- EU, UNICEF, WFP (1998) Nutrition Survey of the DPRK, November 1998
- FAO/WFP (1998)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s Republic of Korea, Special Report, November 12, 1998,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States
- Frisancho AR (1993) Human Adaptation and Accommodation. pp. 357-397.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Press.
- Hamill PVV, Drized TA, Johnson CL, Reed RB, Roche AF (1977) NCHS Growth Curves for Children, Birth to 18 Years.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publication number PHS 78-1650. Hyattsville, Maryland: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 Lohman TG, Roche AF, Martorell R eds. (1988) Anthropometric Standardization Reference Manual. Champaign, IL: Human Kinetics Books.
- Marshall WA, Tanner JM (1986) Puberty. In Human Growth: A Comprehensive Treatise, 2nd ed. Vol. 2. F. Falkner and J. M. Tanner, eds. pp171-209. New York: Plenum Press.
- Martorell R (1984) Genetics, environment and growth: issues in the assessment of nutritional status. In Genetic Factors in Nutrition. A. Velaquez ed. pp 373-392. New York: Academic Press.
- Martorell R (1989) Body size, adaptation, and function. Human Organization, 48:15-20.
- Pak S (1995) A Longitudinal Study of Growth, Maturation, and Functional Performance among School Children in Seoul, Korea. Unpublished Dissertation.
- Tanner JM (1978) Education and Physical Growth. New York: The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Tanner JM (1986) Growth as a target-seeking function: catch-up and catch down growth in man. In Human Growth: A Comprehensive Treatise, 2nd ed. Vol. 1. F. Falkner and J. M. Tanner, eds. pp. 167-180. New York: Plenum Press.
- Waterlow JC (1972)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of protein-energy-malnutrition. British Medical Journal, 3:566-568.
- WHO (1978) A Growth Chart for International Use in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working group (1986). Use and interpretation of anthropometric indicators of nutritional status. Bull WHO 64:929-41.

탈북자들의 법적 지위와 현실

이금순(통일연구원)

Dr. Lee Kumsoon (Institute for Unification)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도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내법상으로 북한 주민은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²⁾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을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당연히 이들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헌법 제2조 2항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의 의무를 지게 된다. 관련법률은 북한에 주소·직계 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재외공관포함)에 보호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들에 대해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실제로 탈북자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⁴⁾ 우리 정부는 서독의 동독주민처리와 같은 무조건적인 보

- 2) 1996년 11월 21일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소지한 이영순의 「강제출국위현판결」에 따르면,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발급한 해외공민증을 소지한 자도 헌법 영토조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이씨가 출생당시 부친의 국적이 조선이었고 대한민국 건국이후 부친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바 국적법 제2조(“출생할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자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 3) 북한이탈주민의 용어 정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인도주의 원칙은 동법률 제4조, 보호신청은 동법률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 4) 1996년 8월 중국주재 한국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96년 여름대홍수 이후 북한을 탈출, 중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현재 5백~6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996.8.24.

호를 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북한도 남한과 같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관계 현실상 탈북자의 처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탈북자의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 국제법상 북한국민」이라는 이중적 신분은 분단국에서 발생하는 특유한 현상으로, 남북한간의 관할권 충돌이 불가피하다. 탈북자가 남한 단독수교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우리 정부가 영사권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남북한 동시수교국⁵⁾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동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이라는 점에서 현지국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남북한이 동시에 관할권 행사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오랫동안 사회주의 동맹관계를 유지한 국가들은 탈북자를 북한의 공민으로 간주하기 쉽다. 탈북자가 북한 단독수교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북한주민으로 인정하여, 우리 정부의 보호권 행사를 합법적으로 부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영사보호권 행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는 관할권 주장을 자제하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 탈북자들을 북한의 공민으로 인정하여 북한당국에게 보호권을 맡겨둘 수는 없다. 탈북자들이 실질적으로 반정부적·반체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허가없이 국외탈출을 시도한 것이 체제에 대한 저항적(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냥게 된다면, 일차적인 탈출동기가 빈곤 내지는 기아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경제적인 요인일 경우에도 탈출자에 대한 정치적 박해 및 처벌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관례상 난민에 해당하게 되며⁶⁾, 강제송환이 금지된다.⁷⁾

탈북자들이 남북한 주민의 지위를 떠나 국제법상 별도의 지위를 부여받는 방안인 난민지위 획득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은 1951년 난민협약서와 1967년 난민의정서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계층,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로 인해 자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거나, 자국의 보호를 요청하지 못하고 국적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즉 전쟁과 박해 등 정치적 이유로 외국으로 탈출한 경우 개인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난민으로 보호나 원조를 받게 되는 것이 기본 절차이다. 물론 전쟁 등 긴급한 상황으로 대량난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보호를 결정하기도 한다. 냉전종식 이후 다민족국내 인종분규와 그에 따른 대량학살 등으로 인해 외국으로 탈출하는 난민과,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고향을 떠나 자국내에서 떠도는 국내 실향유민들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가난과 환경파괴, 정부의 자연재해 방지 및 대처능력 결여가 맞물려 상황이 어려워진 경우 빈궁에 처한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한계상황에서 고향을 떠나는 경우를 환경난민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⁸⁾ 학술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는

5)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남북한 동시수교국의 입장에서 보면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동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이다.

6) 제성호, “북한 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북한연구』(1994 가을)

7) 국제관례상 모든 국가는 난민관련조약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난민 강제송환 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8) 이신화, “환경난민”이란 무엇인가?: 대량탈북 위기에의 조기경보”,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1997.

실정이다.

이제까지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형법 제47조⁹⁾에 의거 정치적 박해 또는 처벌을 받을 위험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난민(refugee)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1996년말 이후 식량을 구하기 위해 탈북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완화¹⁰⁾하여 왔고, 탈북자 송환과정상 비인도적 처우도 상당부분 개선되었기 때문에 탈북자를 난민 협약과 의정서에 규정된 엄격한 의미의 난민(mandate refugee)으로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난민판정은 현지국의 주권사항이며 다만 현지국이 요청하거나 난민판정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일 경우 UNHCR이 개입할 수 있다. 현재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하여 자유의사에 따른 정착허용과 보호를 추진하기에는 현지국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탈북자의 지위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리만큼 탈북현상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강제송환이후 탈북자들의 처벌강도가 시기별, 개인의 북한내 사회성분, 출신지역, 현지국내 체류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 탈북자들의 상황을 일반화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나, 강제송환될 경우 일부의 경우에는 여전히 정치범으로 규정되어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탈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일시피난민’¹¹⁾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냉전이후 지역분쟁의 증가로 난민과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내외실향유민(Internally & Externally Displaced Persons)이 급증함에 따라 UNHCR과 각 국들은 보호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내전을 피해 국경을 넘은 긴급피난민의 경우에도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제한적인 보호만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자국내 정착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심지어 인도주의가 정착된 서방국가들의 경우에도 난민판정절차를 엄격히 하고 있어 국제인권기구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UNHCR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1992년부터 일시보호(Temporary Protection)를 인정하여 개별국가의 신속하고 융통성있는 보호를 유도하고 있다. 일시보호제는 관련당사국의 합의하에 일반화된 갈등·분쟁 또는 인권남용지역을 탈출한 피난민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한 방식으로, 난민 보호상 의무인 난민인정 절차와 난민의 제반권리(교육, 복지, 노동권)에 대한 유보가 인정된다. 그러나 일시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상 일시보호에 대한 개별국의 해석 및 적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시보호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엄격한 의미의 정치적 난민

9) 북한형법 제 47조는 “공화국 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북한은 탈북자가 급증하자, 1998년 개정헌법에서 민족반역죄를 삭제하였고, 명분상 탈북자를 정치범이 아닌 일반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11. 일시피난민은 기본적으로 피난의 원인이 상당부분 소멸될 경우 자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써 현지국 정부의 보호관련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탈북자의 경우 ‘긴급피난’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은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절박한 피난의 사유(내전, 대량살상의 위협, 심각한 재해발생)가 있어야 하며, 현지국은 긴급피난민에 대한 정치적 망명 허용 및 난민지위 부여 등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1951 협약과 1967의정서 규정)에만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의 난민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에 부합되는 제도이나, 약 6개월정도의 보호를 허용하는 잠정적인 해결방식이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어려움이 있다. 일시보호체제는 입국허용, 강제추방금지, 인도적 대우, 위협소멸후 자발적 귀환을 원칙으로 하며, 대량 피난민의 유입에 대해 단기간에 사용하는 응급수단이다.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의 현실이 정치적 망명의 경우보다는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경우가 다수임을 인정하고, 중국내 체류 희망자들에 대한 '일시보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시보호개념을 도입할 경우 북한내 식량난이 완화될 경우 자발적인 귀환을 추진하는 것을 기조로 한다. 이는 일시보호로 인해 탈북자들의 국내수용 요청이 둔화될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일시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실시될 경우 관련 지역당국에게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나, 다만 관련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지원이 조선족(고려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형식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에 대한 일시보호 추진시 북한과 중국간 체결된 1986년 국경지역업무협정 제4조 1항에 근거 탈북자를 재난 및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월경으로 처리하고, 재난시 구호의무(제1조 1항)에 의거 공안당국이 아닌 중국 홍십자사 등이 구호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외탈북자의 경우에도 실향유민에 대한 '일시보호' 차원에서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최소한의 보호를 실시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국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발제3

북한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NGO 역할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전망과 해결방안의 모색

윤여상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집행위원)

Yoon Yeosang (Citizen's Alliance to Help Political Prisoners in North Korea)

1.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중국에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가와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결과가 보고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이 한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성격규정과 인식, 관련국가와 관계기구들간에도 의견을 보이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9월 20일 제54차 유엔총회에서 '국가주권보다 개인주권이 우선'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세계화와 국제협력의 시대를 맞아 각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의미하는 개인적 주권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인권유린 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국가주권을 이유로 더 이상 국제사회의 개입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일 우다웨이(武大偉) 주한 중국 대사는 특정 국가의 내부문제에 대하여 주권보다 인권이 우선한다는 주장은 '신간섭주의'로서 이에 대해서는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견해의 표명은 지난 3월 한국의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의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인권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이 탈북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에 대한 합의와 실천도 없는 상황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주장들만이 되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에 비해 재외탈북자는 그 규모와 심각한 생활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은 법적 성격, 외교적 관계, 남북관계 등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생활환경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자료도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탈북자들의 은신처가 중국, 러시아 등지에 분산되어 있고, 이들이 신분의 위험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 등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의지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일 것이다.

탈북자의 존재는 한국, 중국, 북한에게 국내적 문제로서 만이 아니라, 외교적 난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역량을 결집한다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실상과 전망 그리고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탈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고 이를 위한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국제기구들의 향후 정책변화와 활동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중국내 탈북자 현황

1) 현지 탈북자의 실태

중국내 탈북자는 주로 북한과의 국경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한국대사관에 망명 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였다. 정부는 한국재외공관에 망명을 요청한 탈북자는 러시아와 제3국을 포함하여 전체 탈북자의 극히 일부분인 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내 탈북자의 다수는 조선족 사회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이들은 신분에 따른 위협과 언어소통, 그리고 친척의 원조 등의 이유로 조선족이 집단 거주하는 연변자치주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정부의 단속강화와 조선족 사회의 수용의지 약화로 국경과 원거리에 있는 흑룡강성, 요령성 등의 내륙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는 북경과 남방지역 도시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탈북자들의 분포 지역이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자 조사보고서는 중국내 전체 탈북자 규모를 10만명에서 30만명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7년 이전까지는 전체 규모를 3만명선으로 추정하였으나, 1998년 이후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급속한 증가의 원인은 신규 탈북자의 대량유입보다는 기존 탈북자들이 북한의 식량 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사실 때문에 귀국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9년 이후 탈북자의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들의 내륙 한족 주거지로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까지 10만명 이상의 탈북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탈북자의 주류는 국경지역 근처의 고등중학교 출신의 일반 노동자들이며, 이들의 다수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탈북목적은 대부분 식량부족이었다. 탈북자의 대부분은 중국 현지생활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으로의 귀환과 한국행을 원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그 이유로서는 북한으로의 귀환이 가능하고 한국으로 갈 경우 잔여 가족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생활이 어려울수록 한국행 희망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탈북 여성들에게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인신매매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

탈북자들이 한족 홀아비나 조선족 농촌 총각들과 서로의 필요에 의해 동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인신매매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북한여성들을 은밀하게 데려와 매춘업소에 알선하는 전문조직도 성행하고 있다.

2) 북한송환실태와 송환시 처우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단속한 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북한으로의 송환규모는 중국측의 단속강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탈북자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1997년 이후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1999년 이후는 대대적인 탈북자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모 국책연구소가 탈북자들의 분포가 높은 동북3성 지역을 실사하여 작성한 「북한의 탈북자 및 사회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송환 탈북자는 1996년 589명, 1997년 5,439명, 그리고 1998년에는 6,300명으로 증가하였다. 북한은 1993년부터 사회안전부 경비대외에 인민무력부 병력을 국경지역에 증강하여 탈북자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였으며,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공개처형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탈북자의 급격한 증가와 대규모 송환자 발생, 그리고 북한의 경제난으로 사회질서가 이완되면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최근에는 식량사정으로 인한 단순 월경일 경우 1주일에서 1달 정도의 구류생활 후 석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공개처형과 강제이주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당국은 탈북자 발생시 그 남은 가족들에 대해서는 감시강화 등의 처분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량획득을 위한 단순 월경이 아니거나 탈북 후 중국에서 한국인과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심각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자가 한국으로 입국하였을 경우 남은 가족들에 대해서는 강제이주 등 혹독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탈북자 관련 국가와 단체들의 태도

1) 중국정부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공론화하기보다는 비공식적, 비공개적 방법으로 처리하기를 희망하여왔다. 따라서 그 동안 중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북인 또는 방관하는 자세를 보이며 부분적인 단속만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우다웨이 주한 대사를 통해 밝혔듯이 탈북자는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일 뿐이며, 한국의 민간단체와 종교단체들의 탈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했다.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이들의 전통적인 인권정책과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음 세 가지 요인들의 결합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소수민족 정책의 연장선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시각이다. 중국은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는 조선족들이 탈북자 문제로 인해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한국과 북한의 외교적 문제에 간여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계산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중·북간에

외교적 난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권침해 우려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조선족과 탈북자의 격리, 한국주민과 조선족의 접촉 약화 그리고 한국사회와 탈북자와의 격리를 통해 탈북자 문제를 회피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현재 상태에서는 변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중국내 탈북자의 다수는 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 한국정부

한국정부는 재외탈북자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왔다. 재외탈북자 문제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분야였으며, 관심을 갖고 있다해도 표명해서는 안 되는 분야로 남아있어야 했다. 이는 중국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우려한 결과였으며,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작용한 결과였다. 또한 중국정부가 이들에게 합법적인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일조 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탈북자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적, 비공식적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외면하는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왔다. 즉 북한에게 탈북자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식량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 외의 대안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최근들어 정부내에서 탈북자에 대한 관심표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3) 북한정부

재외탈북자 문제가 제기된 근본적 원인은 1990년 이후 지속된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부족이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식량난을 해결하여 탈북자 발생을 방지하거나, 국경 경비를 더욱 강화하여 탈북자의 중국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상황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어려운 실정이다.

4)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중국정부의 단속과 한국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탈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조선족 사회와 한국의 민간단체이다. 탈북자 지원은 종교단체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인권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사) 좋은 벗들>,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탈북자에 대한 임시거처제공, 생필품 제공, 생활비 지원, 의약품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단속과 신변에 대한 위협, 재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활동 외에도 탈북자의 인권침해사례와 실태를 조사하여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공개하여 국제적인 지원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지원활동은 국내단체들 뿐만 아니라 외국의 민간단체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대부분 탈북자에게 난민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지원방안의 제언과 전망

1) 지원체계와 문제점

탈북자 지원에 대한 공식적인 체계는 갖추어 있지 않다. 탈북자가 공식적으로 난민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과 외국의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정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탈북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중국 조선족들과 이들의 민족애이다. 조선족들은 북한 식량지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탈북자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탈북자 보호에 관한 조선족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중국정부의 감시, 재정난, 인력난 등 많은 제약요인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자의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와 열악한 생활환경이 알려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지원활동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탈북자들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신변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정부의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불가능한 현실적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탈북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재외탈북자 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미비를 들 수 있다. 셋째, 민간단체간의 네트워크가 미비 되어있다. 넷째,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어렵다. 다섯째, 위장탈북자의 선별이 어렵다. 여섯째, 통일된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곱째, 지원내용이 일시적 지원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여덟째, 국제적 민간단체와의 연계가 부족하다.

2) 지원방법과 지원내용

현재의 상황 속에서 탈북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민간단체를 통한 접근방법이다. 현실적으로 당사국의 난민지위부여 이전에 이들에 대한 국제기구나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지원이 어렵다. 그러므로 탈북자 지원단체는 이들에 대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최우선적인 전략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조선족과 현지 활동 단체들의 직접적 지원 방법과 이들을 다른 단체들이 지원하므로써 직접적 지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간접적 지원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간접적 지원활동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현재 중국 현지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의 활동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일반 민간단체들은 재원과 필요물품들을 직접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에 위탁함으로써 지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탈북자 지원센터」가 성립된다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써 탈북자들의 밀집 은신지역인 조선족 사회에 대한 대규모 지원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선족 밀집지역인 연변지역에 생산공장과 농장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 및 장려하여 조선족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막이 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조선족들의 한국 취업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함으로써 탈북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탈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신변보호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다. 탈북자들과 현지에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관계자들은 현금, 의류, 의약품, 식료품, 지원인력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되길 바라고 있다.

3) 「재외탈북자」 지원센터의 설립

탈북자의 지원을 위해서는 현실성, 효과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고려될 수 있는 유형으로는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그리고 민관협동형이 있다. 현실적으로 민간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민간영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주도정부보조형이 우선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칭 「재외탈북자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탈북자의 인권침해와 생활환경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관계국과의 외교적 문제와 남북관계 그리고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 때문에 적극적, 공개적인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상대적으로 활동이 자유롭지만 빈약한 재정, 인력부족, 정보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재외탈북자 지원센터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보유한 자원을 제공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재외탈북자 지원센터」는 국제기구와 외국단체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여야 하며, 외국단체들의 참여가 활발할 경우 정부의 참여를 배제하고 순수 민간기관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재외탈북자 지원센터가 개설될 경우 우선적인 과제로는 자료와 정보의 공유, 실태조사, 지원방안수립, 장기계획수립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그 대상의 특수성과 참여하는 각 단체의 성격에 따른 차이, 외국단체와의 연대 문제, 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공동참여 형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4)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전망

탈북자에 대한 지원체계는 국내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단일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들의 탈북이 계속되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들의 생활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체류기간의 장기화를 들 수 있다. 1997년까지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식량을 구하여 북한으로 돌아갔으나, 1998년 3,4월경부터는 돌아가는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탈북자들의 현지체류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탈북자들의 현지 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현지정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호전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감수하면서라도 중국체류를 희망하고 있다.셋째, 탈북자 증가 가능성의 상존이다. 탈북자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크게 북한의 배출요인과 중국의 유인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의 배출요인으로는 식량난 악화, 탈북자 발생시 남은 가족에 대한 처벌 악화, 탈북자 송환시 처벌 악화, 사회치안 불안으로 이동 용이, 지형적 특성상 월경 용이, 중국측 소식 유포로 정보획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은 북한의 배출요인인 식량난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으로의 탈북자는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구조적 문제로 인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설정이다.

중국의 유인요인으로는 국경지역의 조선족 거주, 중국 국경경비 미흡, 상대적인 경제발전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송환하고 있으나, 탈북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의 식량사정과 국경경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탈북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5. 맺음말

재외탈북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탈북자 문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간에 심각한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의 일부는 난민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은 인권유린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동포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 집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의 지원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시대를 NGO의 시대라 부르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 시민단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한다. 국가와 시민단체는 상황과 처한 조건에 따라 상호 갈등관계나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한다. 국가와 민간단체가 동일한 목적의식속에 자발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할 경우 그 효과는 대단히 놀라운 수준으로 나타난다. 재외탈북자 지원문제는 정부가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민간 양쪽의 문제점을 보완한 민관협동형 모델에 따라 국가와 민간이 협동·분담하는 형태가 적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외탈북자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현재 민족과 이념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현재는 생존의 문제를 두고 남과 북,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 국내와 국제사회가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탈북자 실태는 최근의 조사보고서와 현지인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참고된 조사보고서는 「재중북한난민실태조사보고서」 ((사)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1999. 8),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사)좋은벗들, 1999. 8), 강정구·법률,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서울: 정토출판, 1999), 서일·이윤환, "북한난민의 건강실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춘추사 공동세미나 발표문, 1999. 5), 윤여상, "재외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식량난의 실태」 1997 보고서, (1997. 10) 등이다.

초청합니다.

20세기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동안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였던 행복과 평화의 모델과는 멀어져 있는 듯 합니다. 세계 각 곳에서는 성, 종교, 빈부, 이념 등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관 속에서 희생당하고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식량난의 고통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북한 동포들, 그리고 탈북 난민들, 고통으로부터 목숨을 건 탈출을 하였지만 죽음보다 더한 인권 탄압 사례에 그들은 놓여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각 국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안은 채 불안과 공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고통을 넘어 평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눈 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로서 치부한다면 그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를 스스로도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아시아의 인권과 난민실태를 통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자각과 해결방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뜻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버어마, 방글라데시의 난민 실태

발제 1 : 슈만나란카르 마하테로

(Ven. Sumananankar Mahathero 스님, 방글라데시 난민구호활동가)

발제 2 : 아웅 묘민

(Aung Myo min, 버어마 난민구호활동가)

■ 일시 : 10월 16일(土) 오후 2:00 - 5:00

■ 장소 : 정토회관 3층 강당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

(사) 좋은벗들 조사연구부

I. 머리말

북한은 사상 유례없는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90년대 초반에서부터 이어진 식량난으로 인하여 이미 350만명 이상이 95년 이후 약 3년여 동안에 기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은 연이은 자연재해와 화생 불가능한 농업구조, 파괴된 산업 시설 등 북한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식량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외부에서의 대량의 식량원조가 없는 한 앞으로도 기아로 인한 사망자 수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식량난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식량배급이 없으므로 스스로 식량을 찾아 먼 길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산과 들로 먹을 것을 찾아 유랑하는 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시장에는 집안에 돈이 될만한 가재도구를 가지고 나와 장사를하는 사람이 증가되었다. 북한내에는 이렇게 식량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난민이 전체 주민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북한의 교통로를 따라 이 도시 저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에서는 이삭주이나 산나물을 캐고, 도시지역에서는 농촌지역이나 어촌에서 구한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유랑하면서 연명하던 주민들 중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최후의 선택으로 국경을 넘는다.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은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친척이 없는 사람은 중국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다. 허가 없이 국경을 넘게되면 불법 탈국자로 처벌을 받게되고, 국경경비대의 단속도 강화되었지만 짚주립에 지친 북한주민들의 월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국경경비대의 눈을 피해서, 또는 경비대에 뇌물을 주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식량난 초기인 95, 96년에는 중국에 넘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 친척을 찾아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었으나 최근에 넘어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과, 여성들 중에는 중국에서 결혼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정착한 수치파악은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 넘어와서 중국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정착하기를 원하는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와서 북한에서 급주림으로 고통받았던 것 이상으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의 인권침해 실태는 심각하며 이들의 실태파악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해진 상황이다.

II. 북한 식량난민의 분포 및 인권실태

1. 북한 식량난민의 분포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식량난민의 수는 최소 30만이상으로 추정된다. 조사는 전체 동북3성(약 1억400만명) 294개 시·현중 29개 시·현(약 1천180만명)에서 진행되었는데 조사된 2,479개 마을의 총 주민수는 약 165만명, 조사된 난민의 수는 약 2만8천여명으로 총 주민수 대비 난민의 비율은 1.7%이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조사 마을이 속한 29개 시·현에만 분포하는 북한 식량난민의 수를 추정해본 결과는 최소 14만명, 최대 20만명이다. 그러나 29개 시·현의 인구는 전체 동북3성 인구의 11.3%에 불과하며 숨어사는 난민과 떠돌아 다니는 꽃제비 어린이의 숫자가 파악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식량난민의 수는 30만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난민이 분포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이 국경지역에서 가까운 연변지역에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안당국의 수색과 체포를 피해 동북3성의 내륙지역으로 상당수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조사지역의 난민비율을 보면 연변을 제외한 동북3성 지역의 난민비율이 1.6%에 이르고 있어서 연변지역 난민비율 1.9%와 큰 차이가 없었다.

난민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난민의 성별비율이다. 전체 난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5.5%에 이르며 특히 연변을 제외한 동북3성지역의 여성난민비율은 90.9%에 달한다. 이것은 난민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에서 식량을 구하는 것이 여성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 북한사회 내부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장기간 이동이 유리한 측면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이 반영되어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동북3성 지역의 여성난민의 비율이 90.9%에 이르는 것은 결혼형태로 거주하는 여성난민이 연변지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동북3성 지역의 난민의 거주형태는 85.4%가 결혼형태의 거주로써 전체 결혼형태 거주비율 51.9%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결혼형태로 생활하는 여성들의 대다수는 국경을 넘으면서 혹은 북한에서부터 인신매

매에 연루되어 팔려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족에게 팔려와 결혼형태로 생활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조선족이 많이 살지 않는 국경에서 거리가 먼 내륙지역에도 난민의 비율이 높은 것이다.

2. 북한 식량난민의 인권실태

(1) 여성의 인신매매

북한의 식량난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여성들의 인신매매이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에는 몇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식량난의 장기화로 인하여 북한내에는 중국으로 시집가기를 원하는 여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중국내 농촌지역에는 중국사회가 도시화되면서 젊은 여성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이 많기 때문이고, 셋째는 조종 변경무역이 중지되면서 그동안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불법적인 사람장사에 나서게 되면서 인신매매조직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북한내에서 부터 인신매매되어 국경을 넘어오는 여성에서부터 강을 건너면서 인신매매에 불집혀 팔려가기도 하고, 중국의 시장이나 역전에서 불집혀 여러차례 팔려가기도 하는 등 중국의 조종 국경도시를 중심으로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는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국경을 넘는 여성들의 50%이상은 인신매매에 연루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은 북한에서 넘어올 때 돈을 벌어서 두고온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로 국경을 넘는다. 그러나 인신매매에 걸리게 되면 강을 건너자마자 국경으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먼 지역으로 이동하고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이들 여성들 중에는 북한에 남편과 자녀를 두고온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인신매매는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고려될 리가 만무하다. 이들 여성들은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불안감과 자신이 물건처럼 팔려왔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충격으로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다.

팔려온 여성들의 대부분은 농촌의 결혼하지 못한 나이든 남자에게 팔려가고, 일부는 유흥업소에 팔려간다. 팔려온 여성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되는데 심한 경우는 쇠사슬로 기둥에 묶인채로 수개월동안을 생활하기도 한다. 여성을 사온 상대 남자들은 대부분 심신이 건강하지 못한 알콜 중독자, 도박꾼, 신체불구지들이다. 그러므로 기분에 따라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 유린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여성들은 온갖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유흥업소에 팔려온 여성들의 경우는 주인의 강요에 의해 매춘생활을 하고 있었다.

저는 중국에 오면 꼭 행복한 생활이 펼쳐지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큰 차이였습니다. 사람 장사꾼은 저를 어느 한 중국의 이름 모를 한 산골의 남자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얼굴이 거무덕탁하고 키는 160cm초과 못한 난쟁이를 모면한 40인밖의 중년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알아듣지 못할 중국말을 지껄이며 나를 방에 갇아놓고 자물쇠로 잠과놓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술냄새를 풍기며 굽어서 움직일 맥도 없는 체녀인 저의 몸을 사정없이 유린하였습니다. 저는 아프고 서러워 날 샐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

다. 그 남자는 내가 도망칠까봐 쇠사슬로 저의 발목을 개 기르듯이 가동에다 매 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비인간적인 생활을 반년나마 하였습니다.

21세 여자 평안남도 대동군

여성난민들은 결혼생활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괴롭다. 중국에서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한 아기 역시 중국사회에서는 호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이들 난민 2세의 처우 문제도 사회문제화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또 북한에 남편과 자녀를 두고온 여성은 이제는 중국에서도 출산을 했기 때문에 다시 북한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새로운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2) 어린이들의 생활

중국의 국경도시의 시장이나 역전에서는 북한에서 식량을 찾아넘어온 북한어린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 아이들은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전이나 시장을 떠돌아다니면서 돈이나 음식을 구걸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가리켜 ‘꽃제비’라고 한다.

중국으로 도강해 온 어린이들은 대부분이 10세 이상의 남자 어린이들이다. 그 중에서도 15세 이상인 청소년들이 월등히 많은데, 걸보기에는 모두 10-12세 정도의 키와 체격을 하고 있다. 10여 년 동안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자랐기 때문이다. 꽃제비들 대부분은 양 부모가 모두 사망 하여 없거나 병을 앓고 있어서 집에서는 도저히 먹고살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중국에 와서도 하루에 세 끼 밥을 챙겨 먹지 못하고, 돈이나 먹을 것을 구걸하여 한끼나 두끼를 겨우 먹고 사는 일이 많다. 중국 사람보다는 한국인 등 외국인이 더 잘 도와 주기 때문에 그들이 잘 드나드는 고급 식당이나 노래방, 호텔, 비행장 등을 자주 찾а다닌다. 밤에는 아무 데서나 되는 대로 잔다. 길가 잔디밭이나 역전 모퉁이에서 자고 비나 바람을 피해야 할 때는 아파트 계단, 공사장, 정차돼 있는 버스 등을 찾아간다.

꽃제비 아이들 중 상당수가 여러 차례 중국으로 도강한 경험들을 갖고 있다. 이들은 구걸하다가 공안에게 잡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가 그 곳에서 도망쳐 다시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오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시고 집도 없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중국으로 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아이들 중에는 북한에 생존해 있거나 병이 들어 앓고 있는 가족에게 자신이 구걸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가서 주고 오기도 한다.

꽃제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것은 잠잘 곳이 없는 것이다. 한겨울에 추위를 이겨내며 밤을 지내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다. 또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건이 마련된다면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구걸하기 위해 길거리를 배회하는 시간에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오가는 또래 아이들을 몹시 부러워한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자신들을 돌려 보내지 않을 것과 함께 자신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길 희망한다.

98년 여름에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마저 굽어 사망되고 보니 고아로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중국으로 가면 살 수 있다고 하기에 생각 끝에 친구와 함께 98년 12월에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용정에 왔는데 용정역에서 불집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용정 수용소에서 2일 갇혔는데 주소와 부모 이름을 적고 조사가 끝나면 우리를 조선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이들이라고 해서 크게 중시하지 않기에 기회를 타 도망쳤습니다. 우리들은 도망친 후 어느 집 담모퉁이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때 마침 조선족 할머니가 우리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밥도 주고 손자 옷들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튿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양계장에서 심부름하고 먹고 자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닭알(달걀)도 푸짐하게 삶아 줍니다. 우리는 내보내지 않는다면 계속 이 곳에서 일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배울 것도 다 배우지 못했고 먹지도 못해 키도 1미터 42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되며 신체 또한 허약하여 중국의 아이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애소합니다. 관리원 아저씨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말 한 마디 하여도 아주 인자하게 대해 줍니다.

18세 남자 함경남도 함흥시

(3) 난민의 노동

국경을 넘는 북한 사람들은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서 중국에 와서 도움을 받아 가족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그러나 중국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난민들은 중국 공안당국의 체포를 피해 불안하게 쫓겨다녀야 하며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지만 쉽게 구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중국에서 북한난민을 보호하거나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3,000~10,000위안의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중국인 한달 통상임금이 500위안인 것을 감안하면 이 돈은 중국서민들에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난민을 보호하려고 하지를 않고, 또 최근 들어서 중국 연변지역의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있어서 중국인도 실직자가 많기 때문에 북한난민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난민들이 하는 일을 보면 여성의 경우는 신분을 감추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보모, 간병인, 식당일 등이고, 남성의 경우는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거나 도심지역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지저분하고 힘겨운 일(인분수레 끌기, 벌목공, 탄광일, 석탄보일러 때는일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난민들 중 31%정도가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난민 중 41%정도는 일을 하고도 숙식만을 해결받을 뿐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사회에서 이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일을 시키고 노임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의도는 없지만 난민을 보호하고 일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기 때문에 아예 임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다행히 노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국인들이 받는 임금의 30%~50%정도의 낮은 임금으로 힘겨운 일들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난민들은 중국에 와서 먹을 것을 배불리 먹으면서 생활하지만 북한에 두고온 가족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하루빨리 되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노임을 받지 못했거나 또 너무 적은 임금 때문에 돈을 모으기가 어려워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애를 태우기도 한다.

저는 지금 한족사람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는 밥을 얻어먹고 자고 있는데 조선사람이라 하여 돈 1전도 안 주고 있습니다. 더욱 말을 몰라 딱답합니다. 잠시는 그래도 먹고자고 하니 괜찮은데 냉식을 조금 얻어 가지고

기려면 돈이 조금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기만 합니다. 요즈음에는 검사가 심하여 불잡혀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잡히기 전에 빨리 가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불잡지 않으면 계속 있으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여 보려고 힘쓰겠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48세 남자 함경북도 청진시

(4) 난민의 강제송환과 처벌

중국에서는 정기적으로 북한 난민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체포된 난민은 조중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에 따라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있다. 그러므로 난민들은 항상 긴장되고 불안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중국에서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나 임신중인 여성일 지라도 수색에 걸리게 되면 예외 없이 모두 송환되며 난민을 보호해준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한다.

파출소에서 차를 가지고 다니며 조선사람이 있다는 집은 몽땅 훑으며 불집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을은 조선여자가 다섯이 있었는데 온 마을에 울음판이 벌어져 그 장면을 보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 갈라지기 아쉬워 우는 사람, 파출소 사람의 다리를 불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울며불며 하였건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분들도 미지못해 이렇게 한다면서 상급의 지시니 우리도 별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그분들도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보위부 감옥이라는 곳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고 따리고 있는 쌍욕을 다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10일 감옥에 갇혔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23세 여자 자강도 흐천시

난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북한에서도 송환된 난민을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송환된 난민들 중 어린이와 단순일경자의 경우는 간단한 교육을 하고 되돌려 보내지만 남자와 중국에 장기간 체류한 사람의 경우는 정치범과 같은 처벌을 하고 있다. 송환된 난민은 우선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취조를 받는데 언제 도강을 했으며,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를 3일~1주일 정도 조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난민들은 심한 폭행과 고문, 폭언 그리고 세세한 몸수색을 당하게 된다. 취조가 끝나고 특별한 혐의가 인정되면 노동단련대, 교화소,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데 어린이나 단순히 식량을 구하려고 탈북한 노인, 여성은 3~7일정도 사상교육을 받은 뒤 돌려보내지고 16세 이상의 사람은 노동을 통한 교육을 받는다.

여러번 탈국했거나 유물이나 금속 등 물품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팔았을 경우, 그리고 중국에 시집을 갔던사람이나 경미한 정도의 인신매매범의 경우는 1년~15년 정도 징역살이를 해야한다. 한국사람을 만났다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

수용소의 생활환경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매우 열악하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사량과 열악한 위생환경, 그리고 노동과 고문 등에 시달리다 보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건강이 쇠약해져서 목숨을 잃기 쉽다.

나는 중국에 다섯 번 왔다갔는데 마지막 번에 건너가다 불잡혀 온성감옥에 갇하게 되었다. 밀고가 들었고 자주 중국으로 다닌다는 소식에 구경 중국에 가 어떤 사람과 접촉하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혹독한 매도 많이 맞았다. 머리가 터졌고 다리뼈가 끝여져 꼼짝 움직일 수 없기에 방법 없이 가정과 련계하고 내보냈다. 반년이 넘는데도 지금도 다리를 절고 있다.

감옥이란 진짜 일본놈때 혹형이라 할 수 있다. 주리도 틀고 두 팔을 평형으로 들게 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물매가 안겨지고 말하면 거짓말하고 토실하지 못한다고 입다물면 주디 불었는가 하고 생트집이니 아래로 맞고 저래도 맞을 바엔 입을 완전히 다무는 것이 상책이었다. 김방은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고약한 냄새로 사람이 질식할 정도지만 배고파도 한 시각 있는 것이 죽을 것만 같다. 진짜 자혹이다. 진짜 파쏘다. 불잡혀 맞아도 앓아 굽어 죽는 것보다 나으니 다시 중국으로 건너왔다.

52세 남자 함경북도 온성군

III. 북한 식량난민문제 해결의 위한 제언

1. 해결해야 할 과제

(1) 난민의 신분보장

국제법상 난민 지위의 기준은 전쟁과 박해 등 정치적 이유로 인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만이 합법적으로 난민으로서 보호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북한 식량난민의 경우는 탈국 동기가 식량을 구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난민으로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이 생명의 위급상황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하여 국경을 넘었으며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거나 자유 귀향했을 경우 북한에서 처벌받을 위험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난민으로서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UNHCR은 이들의 실태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체포 및 강제송환 중지

중국은 1960년 조중간에 맺어진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에 의해 난민을 강제송환하고 있다. 송환된 난민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노동단련대, 교회소,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처벌 받는다. 열악한 수용시설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거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문을 당하는 등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난민들은 몸이 허약해지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예가 많다. 난민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급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국경을 넘은 것이다. 그러나 송환되어 돌아온 난민을 북한에서는 범죄인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송환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볼 때 꼭 중지되어야만 한다.

(3) 인신매매 금지 및 국제결혼 인정

조중 국경도시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3성의 도시에는 북한여성의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비 인간적인 생활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인신매매되지 않은 여성의 경우도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

호하는 차원에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이미 결혼하여 생활하는 여성의 경우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공식적인 국제결혼으로 인정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최소한의 주거시설 확보

중국에는 주거지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이 많은데 이들은 떠돌아 다니다가 쉽게 인신매매되기도 한다. 특히 꽃제비 어린이들은 추운겨울에도 공사장이나 건물계단, 농촌의 짚더미속에서 잠자리를 해결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2. 문제해결의 접근법

북한 식량난민이 30만명에 이른다면 이것은 분명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커다란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 북한을 위시하여 중국과 한국의 관점에서는 당면한 사회문제이며 민족의 문제이다.

북한 난민문제의 해결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주체는 중국정부의 입장이다. 중국은 현지국으로써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식량난민을 보호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왔고 또 양국간에 체결된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과 북한 양국의 외교적 마찰 없이 북한식량난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또 중국정부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수 민족 문제인데 북한 난민들의 대량유입과 난민구호활동을 통한 조선족의 단결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북한식량난민 문제가 공론화되고 공식적인 해결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함께 비공식적인 해결방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제기구는 공식적으로 북한 식량난민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세계적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해야만 한다. 특히 UNHCR(유엔 고등난민판무관)은 이들이 국제법상 난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난민이 원할 경우 맹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최소한 중국내에서 난민캠프와 같은 보호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입장이 특히 중요한데 우선 중국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주기를 당부한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북한 식량난민들이 생명의 위급상황에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난민들이 강제송환되는 것을 중지해야 하고, 여성들이 인신매매되지 않도록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중국에서 인신매매 또는 소개혼 형태로 결혼하여 생활하는 난민들에 대하여 그들이 원할 경우 국제결혼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북한 식량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인 통로를 통하여 국제기구와 중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야 한다. 또 한국의 민간단체는 더 이상 북한 식량난민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난민을 구호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사례들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 이 문제가 국민적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부와 민간 단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난민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한가지 방법은 중국정부의 묵인하에 중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식량난민을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만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한국의 민간단체나 국제 민간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더불어 북한식량난민은 북한내의 식량난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정부 및 국제사회가 대량의 식량을 지원하여 난민발생의 근원을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